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6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11. 21.
- (3) 회 부 일 : 2025. 1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편의증진의 날(매년 4월 10일)로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 ----- ----- ----- <u>하며,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를 개최함.¹⁾
- 개정안은 편의증진의 날로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1) 편의증진의 날은 2023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4년 처음으로 기념행사가 개최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기념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편의증진의 날을 보완·확대하고 편의시설 유지·관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편의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²⁾
- 조사 주기 및 대상의 특성상 전반적인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실태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 1: 편의시설 관련 기존 조사 개요),
-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의 지정은 편의시설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설주들의 정비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이 정해질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별도의 점검 활동 등을 기획·운영해야 하므로, 인력 및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5년 주기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와 매년 실시되는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과 그 내용이 중복될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 및 기존 조사체계와 점검 항목·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실행 여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2) 2025년의 경우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를 점검한 바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관을 통해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인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편의시설 관련 기존 조사 개요>

1.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현황을 분석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모색
- (법적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매년 표본조사 또는 5년마다 전수조사
- (조사대상)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9만 991개소)
- (조사내용)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화장실 26종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

편의시설	세부 편의시설
1. 매개시설	1 주출입구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2. 내부시설	1 출입구(문) 2 복도 3 계단 또는 승강기
3. 위생시설	1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2 욕실 3 샤워실 ·탈의실
4. 안내시설	1 점자블록 2 유도 및 안내설비 3 경보 및 피난설비
5. 기타시설	1 객실 ·침실 2 관람석 ·열람석 ·무대 3 접수대 ·작업대 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6. 비치용품	휠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 등

☐ 조사연도별 설치율 비교

조사연도	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비 고
1998년	-	47.4%	-	*지자체 조사
2003년	-	75.8%	-	*지자체 조사
2008년	107,730	77.5%	55.8%	*복지부 조사
2013년	141,573	67.9%*	60.2%	*복지부 조사
2018년	185,947	80.2%	74.8%	*복지부 조사
2023	190,991	89.2%	79.2%	*복지부 조사

- (예산) 전수조사 주기에 맞춰 예산 편성

* ('23년) 5억 5천만원

2. 「편의시설 실태조사」

☐ 조사개요

- (조사목적)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 (연혁) '97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를 시작으로 관광숙박시설, 국·공립병원·민간 종합병원·보건소,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 일부 용도를 선정하여 조사 실시
- (예산) 별도 예산 없음
- * ('24) 비법정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4천만원)

자료: 보건복지부